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 876

제출연월일: 2015. 4. .
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정이유

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정책 지원 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 수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「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」,「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」,「성동구 외국인근로자의 날 조례」를 통폐합·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총칙(안 제1조~제4조)
 -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
- 나.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(안 제5조~제7조)
 - 지원계획 수립, 지원대상, 지원의 범위
- 다.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안 제8조~제14조)
- 협의회 설치 및 운영, 협의회의 기능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라.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15조)

4

- 마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(안 제16조~제21조)
- 시책사업의 추진, 업무의 위탁,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,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, 표창 바. 시행규칙(안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)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5. 2. 26. ~ 3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 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외국인주민"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구"라 한다)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자녀를 말한다.
- 2. "다문화가족"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 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로 이루어진 가족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- 3. "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"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) 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

- 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 -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
 - 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
- 가.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
- 나.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· 경제적 자립 지원
- 다.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
- 라.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
- 마.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
- 3.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
- 4.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
- 제6조(지원대상)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.
 - ②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 홍보 등
 - 2. 각종 문화 · 체육행사의 개최
 - 3.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 교육사업
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- 2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·훈련 및 일자리 연계
- 3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 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- 4.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장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

- 제8조(협의회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: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, 교육청 ·경찰서·고용안정센터·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

- 2. 위촉직 위원
 - 가.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
 - 나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· 단체의 관계자
 - 다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
 - 라.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-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- 제9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 - 2.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회의 등)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
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2조(의견청취 등)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.
- 제13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- 4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 이확인되는 경우

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・운영

제15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다문화가족지 원법 시행령」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제12조의2 및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.

제5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6조(시책사업의 추진)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·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수 있다.
- 제17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·운영하는 경우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 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- 제18조(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)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지원단체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)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1. 기념식 및 문화・예술・체육행사
 - 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 - 3. 유공자·단체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)표창 및 격려
 - 4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- 제21조(표창)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표

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조례」에 따른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의 날 조례」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및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따라 행하여진 재정지원, 위탁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기존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근거로 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상기 제정 조례안은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통합 제정하는 것임.

4. 작성자

- 성동구 보육가족과 정재신 (연락처 2286-6180)

< 관계 법 규>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, 대한민국의 제도·문화에 대한 교육,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,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23.>

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18조(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 인이 서로의 역사·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, 홍보, 불합 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세계인의 날)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,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.

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4.4.>
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- 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-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 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12.2.1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2.2.1.>
-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
- 2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
- 3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- 4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- 5.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
- 6.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사업
- 7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⑦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, 위탁·지정 기간

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.]

제16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·운 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국적법

제4조(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 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(歸化許可)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 다.

-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다.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서울특별시	성동구	다문화가족	지원 조례」
「서울특별시	성똥구	외국인주민	지원 조례」
「서울특별시	성동구	외국인근로	자의 날 조례

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5. 1.
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5년 4월 13일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5년 4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2015년 4월 23일

(제217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이유

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정책 지원 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 수혜 등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「성동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」,「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」,「성동구외국인근로자의 날 조례」를 통폐합·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총칙(안 제1조~제4조)
 -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
- 나.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(안 제5조~제7조)
 - 지원계획 수립, 지원대상, 지원의 범위
- 다.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안 제8조~제14조)
- 협의회 설치 및 운영, 협의회의 기능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라.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15조)
- 마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(안 제16조~제21조)
 - 시책사업의 추진, 업무의 위탁,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, 지원

단체에 대한 지원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, 표창 바. 시행규칙(안 제2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)

다. 기 타

- 입법예고(2015. 2. 26. ~ 3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별도의 조례로 이원화 되어 지원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
[제1장 총칙] 안 제1조 ~ 제4조에서는

- 본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,
- [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] 안 제5조 ~ 제7조에서는
-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함.

[제3장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] 안 제8조 ~ 제14조에서는

-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 및 그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, 직무, 회의 등과 관 련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음.

[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・운영] 안 제15조에서는

-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고,

[제5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] 안 제16조 ~ 제22조에서는

-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,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행사와 표창 등의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.
- 본 제정안을 살펴본 바,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 으며, 또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,
 -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참조하여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들의통·폐합 및 재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이라 사료됨.
- 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- 7. 토론요지: 없음.
- 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